

정보관련 법제화와 정보보호

‘정보사회’란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의 생산, 저장, 유통, 분배와 관련된 산업이나 활동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하고 그 결과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이 모든 생활영역을 지배하는 사회로 정의된다.
〈이글은 필자가 주관적으로 작성하여 기고한 것이다〉

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사회발전과 정보사회

컴퓨터와 전자통신기술의 접목으로 탄생된 정보통신 기술체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많은 미래학자들은 밝은 정보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사회’란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의 생산, 저장, 유통, 분배와 관련된 산업이나 활동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하고 그 결과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이 모든 생활영역을 지배하는 사회로 정의된다.

흔히 정보사회와 관련되는 ‘정보화사회’란 정보사회로 진입하는 이행기에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와같은 정보사회에 대한 전망은 20세기의 마감을 불과 몇년 앞두고 더욱 더 현실화되고 있는 듯하다. 다른 말로 하면 21세기를 불과 2년 앞두고 있는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정보사회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사회는 기본적으로 정보기술 및 그 인프라(Infra)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구현은 기술적 논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항상 사회적 여건과 더불어 이루어지며 특히 정보통신관련법의 제도화에 의해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보사회관련법의 제정과 내용

정보관련법의 중요성

정보기술의 사회적 확산에 의해 파생되는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다.

먼저 긍정적인 면으로는 시간 및 거리단축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원활화, 생활의 편리성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생산성 제고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이 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면으로는 국가질서 및 경제질서의 문란, 지적소유권 침해, 유해정보의 불법유통, 불평등 사회구조의 생산, 정보온폐, 실업자증가 등이다.

그런데 정보사회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을 줄이고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보화를 전진시키고 좀더 인간적인 정보사회를

구축시켜 나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구축과정은 그 사회적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것을 중점 요소로 해야 하는데 이때 법적 장치의 마련은 도덕적 및 윤리적 규제에 앞서 사회적 질서를 기초짓는 토대가 될 것이다. 즉 정보사회질서를 사회적으로 만들어가고 그 형태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매우 중요하다.

정보관련법의 제정방향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제화 방향은 시스템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는 표준화나 전자적 환경의 상호성 확보 그리고 암호기술 및 시스템 안전대책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넘어 정보주체들의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성 문제는 불가피하게 사회적 규범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정보생산과 유통을 방지하는 것과 연결된다. 사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에 대한 규제는 우리 사회에서는 ‘전산망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화촉진법’ 등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외에도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교육법’, ‘미성년자보호법’, ‘국가보안법’ 등에 의거한다.

가장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형법으로서 1995년 12월에 새로운 범죄유형을 추가하여 부분개정을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를 넘어 다양한 사회변화에 수반되는 포괄적인 법적대응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컴퓨터범죄, 사생활보호 지적소유권 보호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국가

의 안정,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 또는 국가경제질서 등을 매우 포괄적이며 그 적용에 있어 자의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넷(Internet) 등 정보매체의 익명성으로부터 의사소통의 자유와 동시에 책임을 지는 조건은 사이버공간(Cyber Space)을 유용한 공간으로 삼기 위해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정보제공자의 신분을 법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및 법적조치보다는 정보주체들의 자율적인 규제와 책임의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정보보호의 내용과 방향

지금까지 정보관련법의 법적장치는 그 내용이 정보화를 촉진하는 법에 머물렀지 보호하는 법의 내용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정보관련법적 관심은 무엇보다도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정보질서를 위한 기본틀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볼 때 단지 촉진하는 범위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전자적 신개척 분야의 확장으로 인하여 정보사회의 새로운 사회현상 즉 전자상거래, 원격강의, 원격진료, 원격근무 및 위성사무실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원격 근무 및 위성사무실과 관련된 근무지, 근무시간 등은 더 이상 산업사회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개별법인 대응을 넘어 정보사회와 법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하에 포괄적인 사이버법(Cyber Law)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사회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빠른 정보사회변화에 상응하여 복합적이고 민첩한 대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엇을 촉진하고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법철학적 이념 및 법사회적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한 대표적인 영역이 개인정보보호의 중

요성에 관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정보관련법적 이념은 미국과 독일과 비교하여 아직 건전한 정보질서 확립에 머물러 있지만 개인정보 및 권리보호에 있어서 미국과 독일 사이에 사회문화적 차이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유럽대륙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인격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보보호법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의 균형속에서 보다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를 관리하는데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제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권리의 신장과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인바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과 오류정보에 대한 정정을 보장하는 정보보호권을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의 정보공개법에는 이미 만들어진 정보에 대한 공개 유무,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요구만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는 그 수집과정에서부터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어떤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지 않을 권리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보형성과정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 상호합의적이고 균형있는 정보유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기관 및 감시위원회에 의한 검열 못지 않게 정보주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보내용을 모니터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발전방향을 위한 옴부즈맨(Ombudsman)제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금융전산망의 신용정보나 공공전산망의 개인

정보보호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업에서 이루 어질 수 있는 자료의 불법적인 수집과 저장, 자료의 불법적인 이용과 누설, 부정확한 자료의 입력과 이용 등에 따른 정보보호법은 아직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둘째, 산업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업관련의 각종 정보망이 급증하고 그룹간 정보통합이용시스템이 급증하는 등 기업정보력의 증가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기업정보활동 중 일반국민의 알 권리에 비추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기업비밀의 범위를 한정하고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기업정보공개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국민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고객 및 종업원에 대해 기업이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고 목적외에 사용해서는 안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더욱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감시위원회의 설치 및 시민운동의 활성화도 추진되어야 한다. 산업정보화에 따라 기업에 축적된 각종 개인정보량이 많아짐에 따라 유출되거나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정보의 불법적 유출이나 사용을 규제하고 그 책임을 묻는 ‘정보이용규제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이용감시위원회를 상설화하거나 정보민주화를 위한 시민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정보사회의 교육 및 윤리

정보사회의 부적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보주체들의 올바른 윤리의식

이다.

왜냐하면 정보통신기술이 인간에게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공간(Cyber space)의 새로운 행위규범과 책임윤리가 필요하며 또한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Network)가 거대화되면서 제기되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안정성 문제는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전기술을 개발함과 아울러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및 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전문지식 못지않게 정보공동체에서 올바른 도덕권 및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져야 한다.

첫째,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체계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정보윤리교육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에게도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성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사회에서는 평생교육이 일반화되고 정부는 이들을 위한 공개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보기술에 대한 사회적 및 윤리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초중등학교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및 윤리적 쟁점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는 정보기술의 활용을 강조함으로써 기술에 큰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있지만 인간을 위한 정보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정보화에 요구되는 자질있는 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교원자격과정 및 연수과정에 정보기술의 사회성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의 시민으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질이 먼저 개선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고등인력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쟁점의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의 개편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는 전문적 지식의 전수가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문분과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및 윤리적 쟁점에 대한 이해가 소홀히 되기 쉽다.

이러한 이해는 전문지식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교양과정 과목의 신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맺음말 및 제언

정보사회를 위한 정책수립, 입안, 추진 등은 현재의 정부주도에서 앞으로는 시민사회주도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화가 국제적 압력이나 국제사회적 구조변동에 의해 적용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성과 더불어 우리경제의 성숙과 더불어 추진주체인 국민들의 삶의 요구 및 열망에 부합하여야 하는 성격에 비추어 정부주도로 행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민간주도의 정보화, 사회주도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민간주도로 정보화가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화 측면에서는 정부역할이 필요하다. 이같은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정보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복지향상이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정보의 생활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향후에는 정보서비스가 단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과 법적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므로 그와 같은 법적 이념이 반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